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7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 안 년 월 일 : 2022년 3월 31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대항 권한으로 ‘이의제기’와 ‘이의신청’을 규정하고 있는데, ‘이의신청’은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이며 ‘이의제기’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안 제42조제1항에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함. (안 제42조제1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2조제1항 중 “부과·징수, 체납처분 및 이의신청”을 “부과·징수, 체납처분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) ①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 및 <u>체납처분</u>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	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 등) ①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</u> , <u>체납처분 및 이의신청</u> ---- ----- -----	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 등) ①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</u> , <u>체납처분 및 이의제기</u> --- ----- ---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 제목 중 “절차”를 “절차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”을 “부과·징수, 체납처분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<u>절차</u>)</p> <p>①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</u>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<u>절차 등</u>)</p> <p>①-----<u>부과·징수, 체납처분 및 이의제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